
입 법 정 보

2019-13호



목 차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5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7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7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8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9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11
1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4
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2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8
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8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19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3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2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22
3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3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3
36.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4
3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4
3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5
39.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25
4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6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7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28
4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8
4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9
4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9
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30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31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31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2
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3
5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5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정부입법 예고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4.

• 마감일자 : 2019. 8. 5.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1)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라. 법 개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개정)

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수입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적(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9. 6. 24. • 마감일자 : 2019. 7. 1.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 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4. • 마감일자 : 2019. 8. 5.
- 「평생교육법」 제19조의3이 신설(’ 19.4.23.공포, ’ 19.10.24.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인권교육의 내용(안11조의3)
 -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 나. 인권교육의 방법(안11조의3)
 - 1)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필요 시 원격교육 가능

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4. • 마감일자 : 2019. 8. 5.
- 「평생교육법」 제19조의3이 신설(’ 19.4.23.공포, ’ 19.10.24.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장애인 평생교육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 정함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 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소음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0.16.(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신규 지정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주식·사채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실물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9.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와 기능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처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타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타법 개정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 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74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근거 마련 (안 제80조)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 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안 별표 1)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5.
- 마감일자 : 2019. 8. 5.

○ 지난 2019년 4월 23일자로 「고등교육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의 회피·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제3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

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3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제1항 개정)
- 나.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 다. 개정 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함. 이에 대학의 장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 제1항 제5호 신설)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5.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포함,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8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명시(안 제2조의2)

- 1)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 1)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삭제하고 대신 ‘정관’으로 대체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7. 8.

-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2019.4.5. ~ 5.15)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역선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유사성격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도 변경 안내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대학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09.12.29)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8.
-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1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5.
- 반복적인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완전판매교육 강화 (제29조의2 및 별표4)

- 1)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제86조)

- 1)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 1)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7. 16.

- ‘19.4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결과 임신진단서 등이 허위로 확인되어 ’ 19.6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기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어,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자격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안 제47조의3 제3항)

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되, 해당첨제한·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안 제47조의3 제2항)

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 제5항)

라.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5.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기업 전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의4)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을 현행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0조의3)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수익 사용 비율을 현행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이상에서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4조의13)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6.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35호, 2019.0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오기된 부처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
 - 1) 교육부장관은 국가 민간 자격관리자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조사 함(안 제11조의2)
 -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업무를 위탁 함(안 제34조제2항)

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6. 26. • 마감일자 : 2019. 8. 5.
-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함에도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적용예외사유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항제3호)
 -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용 확대 대상기관의 적용예외사유 중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로 조정함.

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7.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 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라.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 기준을 조정함.

2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6.
-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

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 1)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뽀틀 등 포함)

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6.

-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6.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6.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안 제22조의2)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위임(안 제28조)
 - 1)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다. 마약류 등 추가 지정(안 별표2, 3 및 별표8)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주요내용

- 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안 제4조)

- 18 -

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 2)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안 별표 1 및 별표 2)

- 1)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 필요
- 2)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 3)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7)

- 1)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필요
- 2)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 3)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6. 27.
- 마감일자 : 2019. 8. 6.

○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영상 악화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시·도지사에게 중지(中止)신고를 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안전조치하여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였으나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 다. 중지(中止)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 라.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 취급, 운송, 운반)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9조제1항)
- 마. 중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4호의2 신설)
- 바.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7호의2 신설)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8.
- 마감일자 : 2019. 8. 11.

-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개선 부담금 수시 부과 사유 및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 나.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8.
- 마감일자 : 2019. 8. 7.
-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보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8.
- 마감일자 : 2019. 8. 7.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별표 2)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8.
- 마감일자 : 2019. 7. 18.
-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 인력 및 지자체 양성사업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제1항제2호)

3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6. 28.
- 마감일자 : 2019. 8. 7.
-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요건 및 배치 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 1)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7. 1.
- 마감일자 : 2019. 8. 16.
-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 1)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 1)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 1)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기준을 낮추도록 함

3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1.
- 마감일자 : 2019. 8. 12.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 1) 신축 공동주택(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6항 재정)

- 1)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 1)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8항 재정)

- 1)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3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7. 1.
- 마감일자 : 2019. 7. 22.

-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

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36.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7. 2.
 - 마감일자 : 2019. 8. 12.
-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촉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월 공포)으로 '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시행 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습지조사원 위촉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 1)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의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
-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필요(안 제10조의2)
- 1)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중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3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7. 2.
 - 마감일자 : 2019. 8. 12.
-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기관장 직접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위임전결의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 1)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3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7. 2.
- 마감일자 : 2019. 8. 12.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운송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업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교육 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9조의4 개정)

- 1)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을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별표 5)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

나.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30조의2 개정)

- 1)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도 매 2년마다 실시(별표 6)하도록 규정

39.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7. 2.
- 마감일자 : 2019. 8. 12.

-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행위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 부여,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하여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지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발생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 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4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7. 3.
- 마감일자 : 2019. 8. 12.

- 결혼중개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사유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서”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 별지 4호 서식)
 - 1)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 등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 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에 분실사유 작성란 마련(안 별지 8호 서식)
 - 1)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했을 경우에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7. 3.

• 마감일자 : 2019. 8. 12.

○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2)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규제를 개선 함

나.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1) 현행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2조, 별표 4)

1)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이에 따라,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 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7. 3.
 - 마감일자 : 2019. 8. 12.
-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 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 나.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 다.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4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7. 3.
 - 마감일자 : 2019. 8. 12.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소 등 가축 거래 시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산이력축산물 이외 국내산이력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 및 표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가금 및 가금산물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위임·위탁과 과태료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별 내포장된 제품은 식품소분 판매 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등록관청이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4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

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10.24. 및 2020.4.2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 1)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 1)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나.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7. 4. • 마감일자 : 2019. 8. 13.
-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타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 다.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7. 5.

• 마감일자 : 2019. 8. 1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분양·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업종 규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현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6조제6항)

- 1)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신산업 유치, 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 1)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1) 지가상승분을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하되,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예고일자 : 2019. 7. 5.
- 마감일자 : 2019. 7. 15.

○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함
- 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50%에서 75%로 확대함

- 예고일자 : 2019. 7. 5.
- 마감일자 : 2019. 8. 14.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 1)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
 - 나.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 1)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안 제7조)

- 1)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

라.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안 제7조의2)

- 1) 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마.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안 제7조의2)

- 1)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

5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5.
- 마감일자 : 2019. 8. 14.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안 제21조 및 제25조)

-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2 신설)

-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 (안 제 83조 신설)

-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예방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